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4. 3. 28.)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자치구 추천일)
1	동대문	장안2동	장안동134-15일대	67,759	2024.02.15.
2	성북	정릉동 898-16	정릉동 898-16일대	53,971	2024.02.26.
3	강북	미아동 345-1	미아동 345-1일대	44,061	2024.01.12.
4	도봉	쌍문2	쌍문동81일대	64,316	2024.03.04.
5	양천	신월5동72	신월5동72일대	29,665	2024.02.21.
6	관악	신림5-1	신림동419일대	43,247	2023.12.04.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590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	02-901-6838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1	
관악구	주택과	02-879-6304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12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843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